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시행 : 2014년 1월 14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편집자주]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ㅇ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전문건설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개정 내용

ㅇ 종합, 전문의 공생발전과 전문공사의 적정공사비 제고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건설업자의 기계설비공사업(전문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이 폐지('11.12.31)됨에 따라 조문정리

현 행	개정(안)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 – – – – – – – – – – – – 300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대한설비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추진 경위**

추진일	추진내용
2012.1.1.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 폐지로 기계설비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2012.2.6.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이전기관(331개)에 설비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요청 공문시행
2012.2.22.	권도엽 국토부 장관 간담회, 설비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의
2012.4.25.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참여 국토부 산하기관에 설비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의
2012.5.22.	주요 공공기관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첫 발주
2012.10.29.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철폐 등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집' 전달
2012.11.23.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각 정당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건의
2012.12.11.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으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
2012.12.27.	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발표
2013.1.17.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 위원회 발족
2013.1.2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손톱 밑 가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건의
2013.1.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 건의 공문제출
2013.4.9.	서승환 국토부 장관 설비건설업계 간담회,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건의
2013.6.14.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사업 지속 확대 추진
2013.7.10.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방문, 지방자치단체 주계약자 제한규제 폐지 건의
2013.7.19.	이재영 LH공사 사장 면담,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
2013.7.26.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주계약자 제한규제 폐지 건의
2013.9.16.	조현룡 의원실, 이이재 의원실, 박수현 의원실 방문 및 국정감사 관련 LH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질의 요청(2013.9.16)
2013.10.29.	건설시장 동향점검 실무대책반 회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금액 제한규제 폐지건의
2013.12.19.	청와대 VIP 간담회, LH공사 등 공기업의 기계설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의
20134.1.10.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 입찰무효에 따른 재심사 근거규정 신설

■ **현행 및 문제점**

○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재심사근거 규정 부재

■ **개정 내용**

○ 「적격심사기준」에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근거규정 마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재심사)의 규정과 같으며, 재심사사유로 '입찰무효' 추가

현 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 2(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공동수급체 결격사유 명확화 및 재심사 규정 마련(제6조)

■ **개정 내용**

○ 결격사유 중 '부도' 시 법원의 워크아웃은 제외

○ 결격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무효 추가

○ 대표자 이외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하여 재심사 가능토록 규정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 연장

■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3년 · 5년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심사

* 5년: PQ심사항목의 시공경험평가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공사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음

* 종합건설업 공공부문 수주실적(대한건설협회 발표)

('08)41.8조원,100%→('09)58.5조,140%→('10)38.2조,91%→('11)36.6조,88%→('12)34.1조,81%

■ **개정 내용**

○ 공사실적 인정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평가기준 완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기준 완화(별지#4~#7)

■ **개정 내용**

○ 실적제한 이외의 경쟁입찰 시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개정(안)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5)	
	경영상태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공포 : 2014년 1월 21일　시행 : 2014년 7월 22일

앞으로 LPG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 주체도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된다. 또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LPG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 1월 21일 공포했다. [편집자주]

1.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기록 · 완공도면 등을 작성 · 보존토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함

[신설]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제17조제5항 신설)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 완공도면 등을 작성 · 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7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제27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가스시설시공업자

[신설]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제27조제8항)

2.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정도가 과도 · 과소하거나,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제4조)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

[개정]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제46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벌칙(제48조의2 및 제5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 · 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 촉진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제3조제1항)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4.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 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이에 맞게 변경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제5조제1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5.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운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시 · 도지사가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시 ·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신설 시 · 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3, 제42조제2항제8호의2)

2014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2014년도 건설업 적용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4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953,800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28/100, 하도급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8/1,000,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670,000원이다.

□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비고
모든산업	5,210원	일급 : 8시간 기준 41,680원

□ 건설업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구분	월평균 보수	비고
건설업	2,953,800원	고시 제2013-72호

□ 건설공사 노무비율

구분	노무비율	비고
일반 건설공사	28/100	고시 제2013-73호
하도급 건설공사	32/100	

□ 산업재해보험료율

사업종류	요율	비고
건설업	38/1,000	고시 제2013-56호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구분	내용	기 초 액 (월 부담 장애인 1명당)	비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부담 기초액	670,000원	고시 제2013-55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0이상~3/4미달	837,5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1,005,0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상시 1명 이상 미고용 달(月)이 있는 경우	1,088,890원	